

# 건설업 등록 기준 및 업무내용 안내

업종	기술능력	시설/장비	업무내용
난방시공업 제1종	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 학과를 졸업한 자 중 2인 이상	1.수압시험기 1대 이상 2.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	
난방시공업 제2종	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	1.수압시험기 1대 이상 2.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	
가스시설시 공업 제1종	-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-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, 융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-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, 가스, 특수 융접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	-기밀시험설비 -내압시험설비 -자기압력기록계 -가스누출검지기 -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-볼트 및 암페어메타 -절연저항측정기(500V1천MΩ) -그밖에 측정기(버니어캘리퍼스, 내외경마이크로메타, 초음파측정기, 다이알게이지, 도막측정기 등) -각종압력계 -표준이 되는 온도계 #사무실 전용면적 20㎡ 이상	-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-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 -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, 집단공급시설, 저장소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 -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 -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
가스시설시 공업 제2종	다음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(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,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)를 포함)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.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.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	-기밀시험설비 -자기압력기록계 -가스누출검지기 # 사무실 전용면적 12㎡ 이상	-3종의 업무내용 -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 -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이후의 보수공사 -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-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 -액화석유가스판대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

<p>가스시설시공업 제3종</p>	<p>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중 1인 이상  1.다음각 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온돌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가.국사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(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,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)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.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,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,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,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다.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 2.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3.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,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</p>	<p>-기밀시험설비  -자기압력기록계  -가스누출검지기  # 사무실 전용면적 12㎡ 이상</p>	<p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-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,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  -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,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, 변경공사</p>
<p>비고</p>	<p>1.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 전문건설업(가스시설시공업 제1종)의 경우 : 1억원  2.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.</p>		

**가스 및 난방시공업 등록규정**

제9조(건설업의 등록 등)  
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,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,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시,도지사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.  
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무등록 시공행위자 처벌규정**

제 96조(벌칙)  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개정 99.4.15)  
1.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

